

【붙임 2】 창업진흥원 채용 전형별 점수 산출 및 예비순번 부여

- **종합평점** : 전형별 합격자는 매 전형 종합평점 60점 이상(100점 만점, 가점 포함) 득점자 중에서 종합평점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, 종합평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

① **서류전형(일반행정)** : 정량평가 점수와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에 가점을 포함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며, **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자격미달로 탈락 처리**

② **필기전형(일반행정)** : 직업기초능력평가(100%) 점수에 가점을 포함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며, **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자격미달로 탈락 처리**

③ **면접전형(일반행정)** : 각 평가위원별 PT·직무면접과 구술면접 점수 합산 값을 산술평균한 값에 가점을 포함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며, **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자격미달로 탈락 처리**

- **예비순번 부여** :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서류전형의 경우, 서류평가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* 전원 예비순번을 부여함

* 적격자 : 단계별 과락자, 전형 불참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

① **필기전형** : 필기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전형 합격자 범위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지정하고 증빙서류 진위여부 대상자에 포함

- 단, 필기전형 평가점수 동점자에 따른 합격배수 변동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
- 필기전형 합격자 중 탈락자 발생 시 탈락인원과 동일한 수의 예비합격자 서류부터 우선 확인하고, 이 때의 예비합격자는 예비순번 순이되, 필기전형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처리방안을 따름

② **면접전형** :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수 범위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지정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, 퇴직,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③ **채용확정자** :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음